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6. 19.(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2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2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미리 확인했는데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속기록 1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수

치가 나옵니다. KBS 길환영 사장에 대한 불신임 비율인데 일단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는지 아니면 잘못 들었는지 98%가 아니고 88%입니다. 이것을 88%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정정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를 88%로 수정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22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안건 나>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관해서는 나중에 의견진술 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다시 한 번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4-23-08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지난 5월에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므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고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징수율 결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현행 징수율 0%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하단 <2>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서 방통위-미래부 간 소관 분리를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즉시 고시를 발령하는 한편 금년 10월까지 방통위-미래부 간 징수율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구반에서는 먼저 방송사업자 재정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담금 면제·감면기준을 재검토하고, 6%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징수율 결정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올해 말까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으시면 제가….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또 이견이 있어서 표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늦게 합류했지만 고시를 내보내야 하는,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재논의하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고시 시행에 따라 1차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종합편성PP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고시의 핵심내용이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면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방송의 공적책무를 지닌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편성 PP 또한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종편PP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시키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종편 미디어랩과 모기업인 신문사 광고국과 연계된 영업활동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편에 대한 분담금 면제와 별개로 광고 시장조사 등 종편의 광고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신생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정책목표의 달성과 사업자의 성실한 공적책무 수행을 전제로 내려져야 합니다. 최초 종편PP를 도입한 정책목표를 보면 그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융합하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그리고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4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편 도입을 검토한 지 6년이 되었고, 종편 승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규제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이행점검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반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편이 품격 있는 방송, 공정한 방송, 그리고 성실한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통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것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아까 표결로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보고안건을 접수….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안건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도 표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최성준 위원장

- 표결이라기보다는 회의록 표현에 의하면 이런 의견 몇 분, 이런 의견 몇 분이어서 ‘이런 의견으로 접수를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난번에 보고안건 논의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률과 시행령과 고시내용과 과거부터 징수율을 결정한 정책결정이 상호간에 불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을, 법률의 취지나 시행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시 내용을 개선 내지는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일관되게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공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때 연구반에서 안을 도출하는 것도 시간이 딜레이(delay)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했지만 연구반이 결국에는 미래부와 합동으로,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라는 것이 우리 연구대상 제목인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방송이나 통신 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나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수 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목적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징수 및 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전문가, 통신전문가 뿐만 아니고 재정에 관해서 잘 알고 기금운용에 관해서 잘 알고 경영에 관해서, 공공 재정에 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이 연구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연구반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연구반을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고낙준 재정팀장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무연구반을 함에 있어서 전 부처의 분담금에 대해서 정보를 한 번 전수조사하고 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분담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면제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 기재부의 분담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前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분담금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연구반에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재홍 상임위원

- 징수율 제도개선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보면 방발기금 분담금의 면제 감면기준을 재검토한다, 그리고 미래부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꼭 반영시킬 자료를 하나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고삼석 위원님께서 처음 이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두어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에게는 경영결과나 재정상황에 따라 차등할 수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결과 흑자를 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고 적자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아파트 거주자가 자신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방송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수수액에 연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경영에 따라 흑자면 내고 적자면 안 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제도개선 연구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푼도 안 내는 방송사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상당히

지원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방발기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종편4사가 11억 1,900만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는 수익씩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2013년에는 15억 6,800만원이 종편4사에 지원됐습니다. 역시 각 사별로 수익씩 지원된 것입니다. 2012년에 8억 7,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분담금, 방송사업 전파관리 차원에서 내는 기본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방송사들이 내서 형성되는 그 기금에서 지원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옳지 않고 사회정의 개념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도개선 공동 연구반에 가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명칭이 '징수율 제도개선 공동 연구반'입니다. 즉, 징수율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약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지금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분담금 면제 감면기준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담금 면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혹시라도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연구반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연구반에서 연구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하든지 그리고 고시 개정까지 이어질 때는 반드시 의결절차를 거칠 텐데, 저는 사무처에서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연구결과를 단일안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게 다양한 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연구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이 연구반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연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반의 주된 목적은 지금 쪽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담금 면제 감면기준, 또 징수율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이 모호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연구가 진행되고 또 저희 위원들과 연구반과의 사이에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14년 방송광고 모니터링 예산의 확대·변경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보완을 통한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현황 및 개선방안으로 추진체계 부분은 현재 미래부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가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방송광고 모니터링 계획 수립은 방통위에서 하고, 모니터링 집행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하며,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중앙전파관리소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력 및 예산의 한계로 방송광고채널 전수조사가 불가하여 '무작위 표본추출', 즉 샘플링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사대상 및 시간을 확대하고, 집중모니터링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의 미흡으로 조사채널의 일부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종합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일괄 수립하여 조사채널의 중복 및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모니터링 계획 주요 내용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은 분야별로 인력을 증원하여 방송광고 시간·횟수, 간접광고, 협찬고지 형식심의, 지역채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방심위의 디지털심의시스템 등을 이용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실 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채널 및 시간을 확대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다음 주 6월 24일 방송광고 규제 세부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 부분이 있는지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이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니터링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하반기 모니터링은 7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이기주 상임위원

- 인력 증원을 13명에서 26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관별 역할분담은 방통위 모니터링 계획 수립, KCA 집행, 중관소 과태료 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 증원은 어느 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통위 예산으로 KCA에 모니터링 요원을 13명에서 26명으로, 현재 KCA가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 직원이나 KCA의 정규 직원은 아니고….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계약직이 13명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실 판독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우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실확인이 되는 시스템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들이 방심위 쪽으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방심위는 내용심의이기 때문에 수작업입니다. 모니터링의 내용을 다 보고 있고, 저희들은 형식심의이기 때문에 간접광고나 가상광고 같은 경우에 크기가 4분의 1을 초과했는지는 TV 화면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드래그(drag)했을 때 전체 비율이 4분의 1을 넘어가는지,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월드컵 같은 축구경기에서 골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판정시비가 늘 있다가 이번 월드컵에는 골을 넣으면 심판의 손목시계로 센서를 통해 전달이 되어서 온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시스템이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괜히 예산 들여서 했다가 오히려 사업자들과 논란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끝으로 의견을 말씀 드리면 오늘 계획을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어쨌든 방통위가 금년부터는 좀 더 중심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KCA와도 협조하고 중관소와도 협조해야 하고, 때로는 방심위와도 자료를 받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방통위가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관 과에서 인력이 당연히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계획 수립부터 다른 기관의 집행관계까지 관리를 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정말 제대로 된 방송광고 모니터링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실 판독시스템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외부 용역업체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모니터링 요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서울, 일산 쪽에 19명 정도 있고, 지역전파관리소 7군데에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탁해서 해 오던 것을….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현재는 미래부 산하의 지역전파관리소에서 계약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서 부산, 광주, 대전, 전주 등 7군데입니다만 지금 현재 전주는 결원이라서, 6군데의 지역전파관리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 고유의 업무를 지금 타 부처에 위탁해서 수행해 온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방통위의 위상과 기본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나중에 다른 분야도 다 종합 정리해서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방심위의 디지털심의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심위가 방송광고심의 기능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내용심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심의이기 때문에 방송광고의 횟수가 법 또는 시행령에 2회

로 되어 있는데 3회를 했다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시간이 평균 10분, 최대 12분인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12분을 초과해서 16분을 했을 때 제재하는 그런 부분….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통합시간을 잘 지키고 있느냐를 하는 것이고,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내용을 가지고 심의규정에 위반됐는가만 보는 것이고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시간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 분기별 1채널당 6시간을 24시간으로의 확대인데, 이것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채널을 샘플링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각 채널당 분기에 6시간, 저희들이 모든 채널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채널을 전에는 한 분기당 6시간, 3시간씩 두 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4시간씩 해서 월로 합니다. 총 시간이 분기당 3시간에서 4시간 하고 월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한 채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 말에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한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모니터링 업무는 계속 해 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요, PP들 모니터링해서 제재한 것이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PP 업무는 계속 제재해 왔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2월에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조사대상 18개 채널 가운데 영화채널 등 8개 채널에 46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 그 건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작년 연말에 정기적인 모니터링 외에 기획모니터링, 지금 같으면 집중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벌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면, 일부 방송사업자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광고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고된 대로 방송광고 모니터링 보안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가 강화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익규모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지금 저희들이 과징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부분까지는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광고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제적 이득이 과태료나 이러한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모니터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정조치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99조에 방통위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위반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횟수가 많을수록 그것이 합산되는 형식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지금 방송법 시행령 69조 별표 비고란에 직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과태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방송사들이 취득하는 이익보다 더 적어서는 과태료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도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23-08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안건>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는 (주)케이티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13년 8월~'14년 2월까지 총 1,170여만 건의 이름·주민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누출,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조사 경과를 말씀 드리면 금년 3월 6일 경찰에서는 (주)케이티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같은 날 방통위는 미래부와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3월 6일~3월 28일까지, 그다음 4월 29일, 5월 7일은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미래부는 (주)케이티의 해킹경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30일 경찰에서는 (주)케이티의 담당자 2명을 포함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습니다. 5월 27일~6월 13일까지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주)케이티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조회하고 접수한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 박스 아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올레(my.olleh.com) 홈페이

지 관련입니다. 마이올레 홈페이지는 고객 이용요금 명세 조회용입니다. 먼저 이용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에 “요금명세서 조회”를 위해 고객서비스계약번호 9자리를 입력할 경우 본인 일치여부를 인증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해커는 접속한 이용자와 고객서비스계약번호 본인의 일치여부 인증이 없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1,170만 건의 타인 요금명세서를 조회, 개인정보를 탈취한바 있습니다.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못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 접속입니다. 지난 '13년 11월 30일~'14년 2월 25일까지 3개월간의 홈페이지 접속기록을 조사한 결과, 특정인이 총 1,266만 여건을 접속했고, 1일 최대 34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였지만 이를 탐지·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한 행위로 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전송입니다. 이용요금 명세조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가 미비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보통신망법상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올레클럽(point.qook.co.kr;100)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올레클럽은 고객 포인트 조회용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인터넷망 접속 관련해서 고객 포인트를 조회하는 올레클럽 홈페이지는 (주)케이티 고객센터 등 인가받은 개인정보취급자만 사내망을 통해 접근 가능토록 해야 하는데 해커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하였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한 행위로 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정 관리 취약입니다. 사용 중지된 '퇴직자의 ID'로 총 2,753번이나 접속해서 총 8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바 있습니다. 이는 인가받지 않은 이용자의 접근 제한을 하지 못한 행위로서 망법 제28조제1항제2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 통신 관련해서 개인정보 전송구간에 암호화 기술 미적용입니다.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망법 제28조제1항제4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KT 유선계 데이터베이스는 유선고객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먼저 암호화 저장과 관련해서 유선계 데이터베이스 내에 총 396만 여건의 주민번호를 평문으로 저장·관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번호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아래 박스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마이올레 홈페이지 <1>번 이용자 인증 미비항에서 이용자가 홈페이지 접속 후 “요금명세서 조회”를 위해 고객서비스 계약번호를 입력할 경우 본인 일치여부 인증단계 없음, '입력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고객서비스계약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고객센터계약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커가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홈페이지에 고객번호를 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에서 타인의 이용명세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 케이스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ID와 PW로 접속해서 자기 요금명세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개별적으로 자기 ID와 PW를 넣으면 자기 것은 볼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자기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직접 또 ID, PW 이외 추가로 고객센터 계약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아니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중간에 '해커'라는 주어가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의 표현이 밑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입력할 경우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해커가 직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고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3월 6일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일단 미래부와 방통위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또 조사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조사의 법적 근거나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반을 분리·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3월 6일~28일까지는 공동조사를 나갔고, 그다음에 4월 29일과 5월 7일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방통위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했는데 그 조사단에 참여한

관계자들, 자연인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떤 기관,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방통위만 했습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방통위에 관련된 직원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된 직원들이 함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른 순수한 민간 전문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외부의 민간전문가들도 일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뒤에 조사결과와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안)은 아직 설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내용을 보니까 5페이지 <표 1> 부분도 그렇고, 3페이지나 4페이지에서 위반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방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64조의3이나 과징금 부과..., 뒤에 행정처분(안)에는 제가 얼핏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징금 처분이다, 과태료 부과다, 그 조항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같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페이지, 4페이지에 방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2호든 제4호든 이 규정을 위반해서 개인정보유출에까지 이르렀느냐,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또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사무처에서 설명할 때 따로 하려는 것입니까?

○ **업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뒤에 처분안을 설명 드리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와 누출 간의 인과관계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것이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과징금의 경우에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단순히 각호의 위반뿐만 아니고 지금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사실 문제와 그다음에 저희가 과징금 등에 부과할 때 연결고리로 인과관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순서가, 관계자 의견진술이 있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런 처분을 요청한다고 말씀 드리기 위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참고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쪽 조사해 오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당사자인 KT와의 사이에 법령 적용 말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차이가 나지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관계의 차이는 나중에 들어보면 되는데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찰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KT의 입장으로 보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조회만으로는 개인정보유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법률자문 검토결과로는 다수가 조회만으로도 유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판례까지 KT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조회하면 이것이 유출됐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물론 이것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만 이 해커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서 발표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통신사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이용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해커 일당 검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올린 자료에는 물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심결해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나중에 물어보신 것은 이 해커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것을 다른데 판매하든지, 자신이 직접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올린 것이 밝혀진 것이 있느냐는 증거 같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 부분은 지금 경찰 보도자료와 같이 해커와 공범으로 보이는 텔레마케터들이 KT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스크린에 띄워 놓고, 텔레마케터들이 바로 옆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찰조사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홈페이지 해킹에 관련된 법 조항들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말씀하신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유출이라고 하는데 법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누출로 되어 있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보통신망법의 누출, 그다음에 과징금에도 누출로 되어 있는데 누출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올레클럽을 조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조회라는 것은 해커가 그 화면을 보기만 했지 그 정보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의 것은 유출돼서 유통이 되다가 붙잡힌 것이기 때문에 누출이 된 것이라고 보지만 화면에 띄운 것도 저희는 누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띄워 놓고 이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적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자체가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부당이득이 생겼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세월이 지나서 그때 화면에 뜬 것을 적어놓았던 것을 그때 가서 유통시키게 되면 그것 역시 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면을 띄워서 보는 것도 누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회도 누출로 본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아까 하나 더 말씀하실 것 있다고 하셨는데….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정하실 때 이것이 분명히 논의될 것 같은데 참고인들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가 판단에 도움을 구하고자 먼저 여쭙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KT 쪽에서 낸 의견서를 보면 핵심요지가 뭐냐 하면 나머지 쟁점들은 이따 제가 확인하겠지만 저희 심결과 관련해서 자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와 달리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호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일단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일방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조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따 참고인 의견 들을 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할 텐데 국내 관례까지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면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개인 정보를 유출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을 때 국내는 처음이니까, 징벌한 외국사례가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설사 지금 이 KT 관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예가 없다, 설사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라도 저희는 그런 경우에 명확하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제가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이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 규정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정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 저희 직접적인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참고인 진술 들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3기 방통위의 중점과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아직 다 합의는 안 났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와 신뢰받는 통신망, 신뢰받는 인터넷을 세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리와 이용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괜찮은 것인지, 미비점과 허점이 없는 것인지 우리끼리라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을 또 들추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 2012년 1월인가 2월이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 공문을 보내 왔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2기 방통위 때였던 것 같은데, 현재의 디지털 기술 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킹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행세칙이나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가?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비난을 받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인과론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KT 쪽에서 이따가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그렇게 반론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통사들이 생각했을 때 방통위에서 제시한 지침대로 가이드라인 지켜서 했다, 그런데 해커가 고도의 기술로 침입해서 도둑질해 갔다, 도둑놈 하나 열 사람이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행동을 법규로 일일이 다 적시해서 규제하고 풀어주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자세하게 규제하는 것을 그 지침에 담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KT가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인터넷 기술상의 인과관계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신뢰받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일벌백계한다면 억울해 할지 모르지만 제3기 방통위의 정책 중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실조사에서 기술진이 가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것은 또 역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을 수 있을 정도의 문책, 징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처 요원들과 여기에 참여한 기술진들이 잘 알아서 분석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탕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이따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을 때 듣고 나면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반론을 할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 현장조사 당시에 참여했던 저희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오라고는 했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내용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어서 KT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KT 측에서 오신 분들 들어와 주십시오.

(㈜케이티 측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하신 분들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상무 나오셨습니까?

○ 박종욱 ㈜케이티 상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진환 변호사 나오셨습니까?

○ 김진환 ㈜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만식 상무보 나오셨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경규 팀장 나오셨습니까?

○ 김경규 (주)케이티 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았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관해서 KT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제가 소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박종욱 상무님께서 먼저….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소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에 앞서 다시 한 번 고객정보 해킹 사고가 재발된 점에 대해 고객 여러분과 정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KT는 금번 사고 후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 시스템 및 플랫폼 체계 강화에 즉각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보호를 기업의 제1원칙으로 설정함은 물론, 국내 통신기업 중 최초로 정보보호 조직을 CEO 직속 편제에 관한 조직개편과 함께 향후 매년 IT 투자 예산의 일정 부분을 정보보호 인프라 및 인력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 국민기업으로서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최우선시 하고 절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중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안은 고객들께 보다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웹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킹 위험도 사전적으로 완벽한 방어를 해내기에는 다소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 드립니다. KT에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판단하신 금번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변론 사항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 사항이 법령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적 의견을 간략히 진술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KT는 고객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표 통신기업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진환 변호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KT를 대리하여 본 건 법률적 쟁점에 관해 입장을 설명 드릴 수 있게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명함에 있어서는 발표한 제목과 같이 주로 과징금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잠깐 위원장님, 아까 사무처에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법규위반 사실까지만 설명이 됐는데 지금 KT 측의 법률대리인께서 법률 적용 내지는 처분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행관계가 만약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면 KT 측에서 먼저 설명하고 사무처에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무처에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사무처에서 어디까지 설명했느냐 하면 자료 5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그 이후에 6페이지를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위반이라고 설명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됐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한다는 설명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법 규정 위반을 했다는 것이 평가가 돼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남석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을 듣고 하도록 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필요하시면 그 뒤에 처분안을 제가 먼저...

○ 최성준 위원장

- 처분안이 아니고, 그 처분안은 더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위반됐다고 판단한다고 아까 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면 지금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의한 것처럼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누출되었는지 이 부분에 또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설명할 것이 있으시면,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KT 쪽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볼 때는 방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해서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생긴 것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내용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제28조제1항, 특히 제4호 암호화 부분은 인과관계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2호 한 것 같아서, 지금 제2호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미리 여쭙 봐서 그렇습니다만 KT 쪽에서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두 번째로 설사 앞의 판단은 어떻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더 설명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까? 일단 설명을 들어보시고 혹시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하시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혹시 오늘 설명하실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 어떨까 몰라서 여쭙 보는 것인데, 법리의 부분뿐만 아니고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KT 내부의 인터넷망에 대한 설명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 회의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공개되어도 관계없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계속 하시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목차 부분 2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킹사고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처분원인사실에 대한 KT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린 후에 간단히 드리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해킹사고와 법령의 해석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화두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00% 예방할 수 있다고 답변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은 바로 옆에 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약점이 없는 완전무결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존재 하는가라는 질문과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킹과 보안의 기술관계는 창과 방패, 도전과 응전의 관계라고 이해됩니다. Microsoft와 같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도 자기가 개발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안패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NASA 나 국방부, 청와대, 또는 eBay 본사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기관이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킹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해킹사고와 법적책임에 관련된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취약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비하였는가가 아니라 취약점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본건의 경우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모의해킹 실시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이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페이지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에서 정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는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규정은 간단히 참고하시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끝으로 참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상세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과하는 매우 드문 입법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고려한 정책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그 관련 지침에 보면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더 나아가 상세한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재나 처벌규정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해킹사고가 갖는 특수한 성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매우 이례적으로 엄격한 입법태도에 비추어 볼 때, 맨 마지막 하단 부분입니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내용은 수범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내용을 이루는 한편,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또한 침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았고, 이후로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처분원인사실에 대한 KT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이올레 웹사이트, 본 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처분원인사실로 요금명세서 조회를 위한 고객센터 계약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본인의 일치여부를 추가로 인정하는 단계가 없다는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파라미터(parameter) 변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증 등의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맨 위에 있는 부분과 같이 파라미터 변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증 등의 조치에 대해서 고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은 보호 조치 기준 제4조제9항 위반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당 조항은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만 일으킬 뿐 과연 사업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4조제9항상 사업자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시에 대한 해설서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해설서의 내용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설서는 제4조제9항에 대해서 실수로 게시판 등에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게시하는 사례, 그다음에 박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글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개인정보 DB가 노출되는 사례, 이 정도로 예시하고 있고, 수범자 입장에서 이 정도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2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법학전문가이자 공학박사인 전문가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 내용을 제출하였으니 세심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재 본 건에 대한 사전 통지서 입장과 같이 제4조제9항을 매우 넓게 해석하는 경우 기존의 SK컴즈 사건이나 넥슨 사건에 있어서도 고시 제4조제9항에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그러한 해석 입장을 취하지 않고, 해당

조항 위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래 명문상 고시 제4조제9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이올레 웹 서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니므로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조치 기준 제2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말한다고 정의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통상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서 DBMS, 즉 Data 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방통위도 2010년에 질의 회신을 통해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웹 서버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현행 고시의 정의 규정에 비취볼 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도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변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증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여러 가지 각종 이유로 나열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보호조치 기준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고시 제4조제9항의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한다면 다음 장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는 제4조제9항의 내용입니다. 박스에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 골자 위주로 살펴보면 작은 박스들로 표시한 내용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를 읽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읽히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전통지상의 해석방법은 이러한 취지에 기초해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만약에 수범자인 사업자에게 결국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러한 취지는 결과책임을 묻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과책임이란 책임 귀속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결과가 발생한 사정만을 이유로 법적책임을 가하는 논리로서 자기 책임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파라미터 변조와 추가 인증 미흡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는 마이올레와 올레클럽 두 사이트에 공히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해커의 접근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의이고, 이에 대해서는 고시 제4조제5항 위반이라고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5항의 내용을 같이 기재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해설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5항에 대한 해설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제1호의 경우에는 침입차단기능을 갖출 것, 즉 방화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2의 경우에는 침입탐지기능을 갖출 것, 즉 IDS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단 부분에 보시면 2회의 이 2가지 기능을 모두 한꺼번에 구현한 침입방지시스템, 즉 IPS를 운영해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KT는 마이올레나 N-STEP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곳에서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모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침입방지시스템은 국정원 인증 제품으로 굉장히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KT는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서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N-STEP ID와 PW 입력, 그다음에 접속한 PC의 MAC 주소 확인 등 여러 단계에 걸친 접근통제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도 이 부분을 고시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전 통지서에 보면 해커의 접속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징후로 당연히 판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일 최대 34만 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KT의 전체 트래픽 1일 평균 3,300만 건에 비하면 극히 소규모에 불과해서 이를 바로 이상징후로 판별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일 최대 34만 건을 초당으로 나누게 되면 3.94회에 불과한데 당시 벤더 표준으로 이상징후 기준인 초당 4,000여 회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KT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접속 후에 해커의 활동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이상징후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속 후 활동내역을 상세히 분석하는 상용 솔루션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불가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해커가 URL을 알아내서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9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올레클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마이올레 부분에서 상세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4조제9항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아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커가 올레클럽의 개인정보조회에 이용되는 URL을 알아내는 것이 그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근거조항에 해당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을 적어놓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기준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킹 프로그램 내 코딩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접속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단순한 '조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붙여 놓았습니다. 하단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 소정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배영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비로소 누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최근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누출, 또는 유출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혐의는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전제사실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통지서에서 보이는 입장은 퇴직자의 ID가 퇴사 즉시 권한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고시 제4조제2항 위반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시면 박스의 중간 부분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맨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전통지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퇴사자의 ID는 이 장편의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커에 의해서 사용된 URL 정보 중 붉은색과 볼드체로 저희가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퇴직자의 ID입니다. 다만, 암호화가 되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D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나 해당되는 퇴직자 계정 말소처리내역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3년 1월 14일 퇴사일 즉시 말소처리된 내역을 저희가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보호조치 기준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5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퇴직자 ID 말소 여부가 개인정보 조회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커는 인증단계 자체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D, PW를 이용해서 접속하거나 인증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해당 ID 부분은 웹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용자 ID를 화면에 나타내 주는 단순한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용자 ID가 홍길동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화면에 홍길동 님이라고 할 때 그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지, 홍길동이 정말 홍길동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ID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퇴직자 ID 사용과 개인정보 조회와는 규범적 의미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T는 금번 사고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KT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그에 대한 해설내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했고, 자사 퇴직자 ID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록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KT로서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제재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오남석 국장님, 사무처나 혹은 아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누가 반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주장하신 내용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 조목조목 저희 의견을 말씀 드리면 보고서에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무처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레클럽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보고서에 보면 사용중지된 퇴직자의 ID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그 ID는 퇴사할 때 사용되지 않도록 말소처리가 됐고, 그 ID를 이용해서 접속한 것은 아니고 이 ID를 해커가 알고 있다고 것과 이 접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 변호사님!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실관계를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은 없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터넷 관련된 해킹조사를 하면서 해커가 2가지 방법으로 외부망을 통해 올레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퇴직자 ID와 이른바 관리자 권한 2개의 변조된 것이었는데, 퇴직자 ID가 아니더라도 어떤 ID를 쓰더라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서는 지금 퇴직자 ID와 관련된 부분, 접속을 차단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ID에 대해서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히려 퇴직자 ID뿐만 아니고 다른 ID라도 소위 우회접속 경로로 해서….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는 퇴직자 ID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한 것으로 보면 내부망에 접근이 차단되는 퇴직자 ID뿐만 아니라 다른 ID로도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열어놨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런 인증이나 통제 자체가 없었던 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원래는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인 사내망에 접속할 수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꼭 퇴직자 ID가 아니더라도 다른 ID를 이용해서라도 외부 인터넷망에서 사내망을 접속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었다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게 판단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떻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ID가…, 모든 ID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해당된 ID 부분이 인증으로 이용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ID가 인증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어떤 무의미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ID가 인증에 이용되는지 여부, 그래서 다른 ID를 사용하면 언제든지라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인증

에 이용되지 않아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ID가 아니고 무의미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희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김 변호사님께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하지요. 원래는 외부 인터넷망에서 사내망에 접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접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저는 기술자는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 드리면 제가 PT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러한 관련된 사항들이 N-STEP이라는 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불사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커가 어떻게 이것을 취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URL을 획득했습니다. 그 URL을 획득해서 바로 외부에서, 결국 길이 아닌 곳을 통해 바로 우회접속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URL을 획득할 때 퇴직자 ID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볼 때에는 아마 옆에서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URL을 획득했을 때 우연히 퇴직자 ID가 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사용됐던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두 분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 드리자면 해커가 URL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 관련된 부분은 해커가 URL을 알아내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URL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URL을 통해 외부로 접속했을 경우에 차단해야 하는데 그 차단조치가 안 됐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명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URL을 알아낸 사실 자체가 보호조치 위반이 아니라 설사 그것을 가지고 외부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시도했다라도 거기에 대한 차단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 최성준 위원장

- 외부망에서 들어갈 수 없어야 하는데 들어갔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을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께서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위원장님께서 의견진술인들에게 반론권 내지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벌써 기술책임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지나치게 변호사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책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변호사님께 여쭙 봐도 되고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자 어느 분에게 확인해도 좋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주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죄송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족한 경우에 변론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에 회사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은 회사의 책임자들이십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사무처에서 현 단계로서는 더 이상 반론이 없다니까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님 아니면 기술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다른 분에게 궁금하거나 또는 확인하고 싶은 것 또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KT 측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나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대리인이 말씀하셔도 좋고 KT에서 나온 임원들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해킹사고와 법령의 해석이라고 해서 모든 해킹을 100%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문제는 해킹이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접해 본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서 모의해킹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모의해킹을 회사 내에서 누가 하고 누가 방어를 했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외부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연1회 40일 동안….

○ 이기주 상임위원

- 모의해킹이라는 것이 모의해킹을 몇 번 했다, 이 정도는 양적인 개념이고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얼마만한 고도의 기술로 해킹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외부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EU 이야기를 인용하셨는데 EU의 디렉티브(directive)는 이것이 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EU의 디렉티브를 토대로 해서 EU 회원국들이 국내법에 그것을 수용해서 구체적인 법규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회원국들이 판단할 일이고, 디렉티브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형태를 띠 수 있어서 국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 EU의 디렉티브 내용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익적인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적용법규의 명확성, 구체성, 객관성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보니까 현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고시, 그리고 오늘 해설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구체성, 객관성, 수범자들이 보기에 수

용 가능하나, 이것이 결국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 페이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쪽 고시에 제4조제9항이다, 제5항이다, 아니면 해설서다, 아니면 舊 방통위에서 해석, 질의답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법규와 달리 보안사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은 정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공격하는 기법이나 기술이 나날이 달라지고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고시나 해설서가 그것을 쫓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통위 입장에서도 관련법규 해설서까지 계속 현재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이것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 그것이 어느 것이 최고냐,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인께서 주로 설명하신 것이,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KT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고시나 해설서에 나온 내용만 협의로 해석해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KT의 보안과 관련된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내 어떤 해커나 어떤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겠다, 그것이 최종 목표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내지는 인적·물적 투자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입니까?

####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기업으로서 당연하게 후자가 저희들의 고리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도 해킹기술이나 공격방법들은 무한히 발전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초과해서 해킹기술을 완벽하게 따라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들을 과연 KT는 다 했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한 번 났었기 때문에 해킹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인 부분, 원칙적인 부분,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건은 웹 서비스 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보보호에 관련되는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개발도 해 왔고 그다음에 자가진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발굴하는 작업을 합니다. 패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모의해킹 등을 통해 끊임없이 취약점을 도출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했다고 봅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제28조제1항을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그리고 제4호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그래서 주로 오늘 고시와 해설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분야가 워낙 빨리 바뀌고 정말 방패로서의 역할을 기술적으로도 하기 힘들고, 더더군다나 법·제도적으로 쫓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고시나 해설서의 문구해석을 협의로 해서 이러한 미니멈(minimum)은 했다는 것보다는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4호를 보면 IT 기업으로서 수많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만반의 대처, 대책, 보안, 새로운 취약점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2년 7월에 이번과 규모가 거의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KT에서 조치한 그 내용을 간단히 무슨 조치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지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우선 첫째로 2012년도 사고 당시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모두 개선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보고하였고, 이행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다 했느냐는 것을 더 초과해서 2012년 당시에 해커들의 공격방법이 굉장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필요했던 것이 화이트해커(White Hacker) 조직입니다. 화이트해커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렌식(forensic)팀이라고 별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팀을 통해서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 왔었고, 그다음에 'N-디텍트'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대응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커의 공격을 100% 방어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인과관계 입증 문제나 정말 고시의 어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 간의 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현철 단장께서 오셨는데 이번 해킹사고에 대해 미래부와 합동으로 조사할 때도 참여했었습니까?

○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 예, 같이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과거의 순수한 해킹사고 말고 개인정보 유출로 연결된 해킹사고, 과거에 여러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번에 KT를 대상으로 일어난 해킹사고의 수법이나 기법이나 수준에 대해 KT가 대처해 온 수준, 저는 이것이 항상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O, X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그것을 브로드하게 비교분석,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분석단장 정현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점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막기는 사실상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파라미터 변조를 이용한 공격방법인데, 이 공격방법은 서버에 공격자가 비정상적인 정보를 줘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2006년도에도 LG전자에서 신입직원 입사채용지원서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서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 변조방법은 기존에도 여러 가지 명세서나 아니면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서 변조해서 쇼핑몰 요금을 변조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 파라미터 변조가 완전히 새로운 취약점은 아니고 보안업계에서는 보안하는 사람들이라면 파라미터 변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조심하고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사무처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과거 舊 방통위 때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늘 고시와 해설서의 해석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고시 제정 자체가 2008년에 돼서 그 이후에 개정은 일어났는데, 이용자정책국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고시와 해설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리얼타임(real time)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한데 이것이 오늘 이번 KT 사고뿐만 아니고 앞으로 보완, 또 완전히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되어야 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두를 검토해서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하나는 지난 5월에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범정부적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TF를 구성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서 예를 들면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사실상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또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1억원 이하로 됐는데 그것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느 누구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이제는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사고만 나면 바로 과징금 부과가 되면서 매출액의 3% 이내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중요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여쭙 보고, 아까 고시와 해설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해설서 관련해서는 저도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지난번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건도 있고, 말씀하신 망법 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설서는 한 번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기술적인 파트와 법적인 파트를 다시 보완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법 개정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 입증 필요 없다는 점과 과징금이 1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3% 이하로 바뀌었다는 것, 말씀하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생긴 그것이 주요내용입니다.

####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통신 분야, 온라인 분야의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는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가이드라인만 손 봐서 되는 것 같지 않고 고시부터, 결국 가이드라인과 해설서와 기능은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해설서는 전체 업종에 구분 없이 총론적으로 적용하는 해설서 같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업종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업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그것을 가이드라인대로만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또 법률적용 여부를 잘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면 대략 처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보시면 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이올레 웹 서버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이나, 아니냐, 즉 DB냐, 아니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DB가 아니라면 이렇게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데, 제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방통위 질의 회신(2010.12.29.) 검토 의견은 이때 당시에 누가 제출한 것입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제출이라고 한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방통위에서 의견을 요청했을 것이고 질의했을 것이고, 회신 작성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방통위 질의 회신, 검토 의견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시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방통위가 답변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통위가 답변한 것입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방통위의 공문....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질의 답변의 주체는 방통위와 김 변호사님이 2010년에 하셨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저희가 그때 여쭙 봤었습니다. 방통위의 공문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해석은 조금

이따 제가 오 국장님께 입장을 들어보고, KT의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도 연동시스템까지 포함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KT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3조제5호에 있습니다. KT 내부에서도 웹 서버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웹 서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아니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준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더 보호를 잘해야겠다는 회사 방침에 의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오남석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2010년 의견과 지금 의견, 그리고 자문받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2010년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질의했고 검토의견으로 방통위 회신이 나간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각 사업장별로 웹 서버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구성방식, 상호 연계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위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스템 내역 및 운영 형태에 대한 자료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다음은 여기에서 소명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구별되는 별도의 웹 서버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현행 고시 정의 규정에 불 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와 달리 전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개인정보 DB와 연동되지 않은 일반적인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와 같이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연동해서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웹 페이지에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부로 보고 있다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KT 쪽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관련된 2010년도 저희 질의 회신은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해킹 사고가 있어서 법원에 그 해당되는 웹 서버가, 그것도 해킹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웹 서버에서 DB로 연동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는 거의 비슷한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쭙보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도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B와 연동이 안 된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DB가 연동이 안 되는 웹 서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견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몇 가지 여쭙 보겠습니다. 이 의견서는 변호사님께서 주로 작성하셨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보면 방통위가 결론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통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렇다는 전제로 가정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KT의 의견서나 전반적으로 KT 또한 결론적인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것이 물론 법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도의 해킹방법이 동원되었는가? 두 번째 예측 불가능, 대응 불가능했는가? 즉 손해배상조항에 책임을 물을 때 보면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여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KISA에서도 오셨지만 제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파로스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고도의 해킹프로그램입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 파로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툴로서 실제로 트래픽 창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해킹에도 이용되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도구는 아니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도구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수준이 낮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 박종욱 ㈜케이티 상무

-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반론을 해 주시지요.

○ 박종욱 ㈜케이티 상무

- KISA에서 말씀한 것처럼 파로스나 파라미터 변조라는 것은 기본적 기술과 방법은 단순한 방법입니다. 많이 알려진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해서 계약번호를 변경했다거나 고객정보를 탈취했다는 상황만을 보시면 초보적인 자에게 당한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안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방법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업무내용이나 그다음에 IT 기술, 해킹 기술, KT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취약점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레마켓이라고 하는 큰 홈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올레라고 하는 사이트만 가더라도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파로스라는 해킹 툴을 가지고서 한다고 했었을 때 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아까 파라미터 변조할 수 있는 부분의 취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사람이 단순한 초보자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이고, 기업이 최근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지능적이고 지속적 공격이라는 APT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이번 해킹자는 APT 기법을 활용할 정도의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파로스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은 네이버에서 웹, 그다음에 해킹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사용법까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지켜야 할 영토가 많고 해커가 어디로 뚫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해커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기저기 해킹을 시도했는데 다른 데는 안 뚫고 KT만 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KT만 뚫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겠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정현철 단장님,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 해커를 직접 조사했다든지 아니면 그 해커가 조사받은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 있습니까?

○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합동조사단 조사를 할 때는 해커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 지금 그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분석단장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경찰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KT 입장도 방금 들었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보안전문가들, 제가 언론 보도내용을 다 봤는데 보안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고도의 해킹 수법에 의해서 당했다기보다는 KT에서 취약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점검하지 못했다, 이 책임이 더 크다는 보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KT는 글로벌 ICT 기업을 지향하는 업체의 보안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취약해서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KT 홈페이지 해킹, 즉 KT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 했는가, 다시 말해서 예측할 수 없는 해킹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가, 이렇게 여쭙 보고 싶습니다. KT가 가입자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알려 와서 알게 됐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보가 된 것이지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만약에 경찰이 통보하지 않았으면 전체 이용자 개인정보가 다 털렸겠네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추측상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21페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전문가는 아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해커의 1일 최대 34만 건 접속은, 1일 평균 3,300만 건의 접속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초당 3.94회는 이상징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논외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1일 최대 34만 건을 접속하는 접속자가 개인이건 판매점이건 몇 건이나 됩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저희들이 사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동일 기간에 유사한 정도의 접속기록을 가진 것이 약 63건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간을 특정해 주시지요? 언제입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2013년 12월~2014년 2월까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63건이라는 것이지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예, 63건 정도의 유사한, 예를 들면 10만 건 이상의 접속기록을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한 개인이 하루에 10만 건 이상을 접속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저희들은 그것을 IP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IP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일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IP를 부여할 때 한 기업 내 2,000명이나 10,000명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의 IP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0명의 조직에서 만일에 저희 올레 사이트를 접근해 올 때 하나의 IP지만 10,000명이 접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내부 사이트에 들어와서라도 그 페이지를 보는, 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만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들도 다 로그로 계산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하루에 한 IP에서 10만 건 이상 접속한 것이 63건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전체지요? 전체로 봤을 때 그 기간에….

○ 최성준 위원장

-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물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접속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4만 건이나 아까 10만 건 이상 건들이 63회 발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IP를 그런 접속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제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침입탐지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 일상적으로 점검해 왔던 것이고, 기준 자체가 34만 건이 과연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왜 너희들은 설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것은 다른 유사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이 이상징후였다고 판단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부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 제 의견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잘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인터넷주소 IP에서 수없이 고객 고유정보를 입력하는데도 KT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T 보안담당자를 사법처리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부장이나 상무님들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든다면 IP라는 기준을 개인으로만 판단하

시면 경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IP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이것은 개인이다, 이것은 법인이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볼 때 여러 경로로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2012년 7월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때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것을 책임졌던 회사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당시 2012년 7월 사건 이후에 시정조치 받아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던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는데 송정희 부문장으로...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 사장님이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이석채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신가요? 그때 언론에 보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보면 인과관계와 상관없지만 시정조치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다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전송구간에 암호화를 전송하도록 그 시정명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그 부분은 제가 1차 사건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대리점의 VPN이 끝나는 단계에서부터 PC까지 그 사이에 암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하라고 시정권고했고, 제가 아는 한 그 부분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전송구간에 암호화로 전송하도록 시정 명령 조치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2012년도 관련된 이행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번에 조사해서 발견한 부분들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달라서 저희가 다를 사안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 이것이 정보의 단순조회냐, 유출이냐는 것입니다. KT 쪽에서는 해커가 접속은 했지만 단순 조회만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보면 해커가 획득한 고객정보를 통해 텔레마케터에게 이것을 제공해서 실제로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제목이 이렇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이용 11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해커 일당 검거합니다.' 이러면 아까 계속 조회만 했지 유출이 아니라고 하는데...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다릅니다. 이것은 마이올레이고 올레클럽은 조회만 됐습니다. 올레클럽을 아까 유출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에 비추어서 이것을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제가 여러 경우를 보면 KT의 이번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결여, 그다음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불가항력적으로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이 아니고 KT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장, 정책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IT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해커들의 그러한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데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해도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 그다음에 책임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진다는 것들, 또 무엇보다도 제재가 상당히 솥방망이입니다. 아시겠지만 과징금이 1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유형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가 정보유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유출 피해보상 및 2차 피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유출 확인 관련 KT 대응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사전탐지 관련해서 10만 건 이상 법인 IP로 추정되지만 그런 데서는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 63회나 있었다는데, 항소심 판결이긴 하지만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탐지해서 DB 관리자에게 경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비정상적인 트래픽이냐에 관해서 과거의 판례들은 대용량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

송하는 동안에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전송되는 것을 이상징후로 감지하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21페이지에 설명한 것에 의하면 초당 4,000회가 되어야만 이상징후로 본다는 것입니까? KT에서는 지금까지 그 이하는 이상징후로 안 본다는 것입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말씀 드리겠습니다. 4,000회라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됐느냐 하면 기업이 탐지시스템을 외부로 통해 구입하게 됩니다. 외부전문기관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하는 장치를 저희들에게 팔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보보안에 관련되는 완전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탐지에 대해서는 제조자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 제조자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탐지했을 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디폴트로 약 4,000회 정도라는 기준들을 설정해서 보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또 해킹기술들도 변하고 계속 상황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정도를 낮추기도 하고 아니면 없애기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패치나 보안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KT는 초당으로 치고 1일 건수로는 기준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1일 몇 건 이상일 때는 이것은 이상징후로 봐서 일단 조사해 본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전달하지 않더라도 직접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KT 김경규 팀장

- 보안장비라고 하는 IPS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많은 정책 중의 하나의 샘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IPS 장비에는 수천 가지의 룰 세트, 탐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개별정책은 보안 벤더사에서 악성 코드나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최적화된 룰을 정기적으로 매월 업데이트해서 저희 회사에 공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 보는 것입니다.

○ KT 김경규 팀장

- 그것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1일 최대 접속건수가 몇 건 이상이면 이상징후로 보고 있습니까?

○ KT 김경규 팀장

- 각각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서...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마이올레 같은 경우에 유출되기 전에 몇 건으로 설정해 놓았습니까?

○ KT 김경규 팀장

- 설정값 자체가 4,000건도 있고 200건도 있고 하루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김 팀장님이 취지를 조금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4,000건은 하나의 IP에서 이 회사에 대해 접속하는 것이 지나치게 우리 시스템에 문제를 끼친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에 4,00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또 다른 경우에 낮다고 말씀하신 것은 수천 개의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2건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1건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다 알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요금명세서를 조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한 IP당 몇 건 이상 조회가 되면 이상징후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트래픽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당장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나중에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무처 의견 있으십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지금 1일 최대 동일 IP로 34만 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최대가 그렇지요.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초당으로 환산하면 하루가 86,400초니까 초당 3.94회가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지금 설정된 기준으로 보면 초당 4,000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초당 3.94와 4,000회를 비교하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 시스템은 동일 IP로 비정상적인 침입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 **최성준 위원장**
  -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없고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이나 비정상적인 것들을 감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의 상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해당 보안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조회에 대한 탐지체계, 예를 들면 그날 하루에 TOP10의 IP를 감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당 4,000회에 대한 설정체계는 보안시스템, 디도스 정도를 막기 위한 어떤 시스템의 디폴트로 되어 있는 시스템의 탐지체계로 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T의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십니까? 박 본부장님!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최고책임자가 본부장, 상무이십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저희 회사는 현 상태에서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는 임원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임원의 상급자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임원이 있고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전문 CISO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데요.



○ 김재홍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 말고 다른 업무도 하시는 것이지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예, CISO는 전문인을, 저는 CISO 전문가는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본인이 KT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압니다. 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변화·발전해 가기 때문에 해킹기술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아까 KISA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뚫고 들어간 해킹기술이 수준의 그렇게 높지 않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것입니다.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기술 자체는 단순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러나...

○ 김재홍 상임위원

- KT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의 선도, 선발기업인 디지털 산업체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해킹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두 분이 IT 기술자 같은데...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용기술 자체는 단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기술을 사 용해서 취약점을 찾는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완벽한 방어장치도 불가능하지만 정보산업체, IT 산업체, 디지털 산업체에 대해서 이 러이렇게 하라고 인간행동을 완벽하게 적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행정청도 존재할 수 없습 니다.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디지털 산업체, 정보 산업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방어장치를 계속 발전시켜 가고 대응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주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 변호사님이시지요? 결과론적 책임이나, 인 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저는 아날로그 분야, 아날로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이지, 디지털 분야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불가능한 것이 디지털산업 개인정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도둑놈 하나 10명이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지만,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해킹, 해커들이 정말 바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산업체,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업하는 산업체들이 충분히 대응해 가지 않으면 그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킹, 해커 우위의 생태계가 되면 디지털 발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서 내린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날로그 분야에 적용하는 결과론적 책임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홀히 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모든 지침과 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정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경시하고 소홀히 해서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인권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인과관계를 꼭 입증해야만 물을 수 있는 책임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징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시대에 디지털 정책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산업체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도 있고 책임도 있고 정책 결정권도 가지고 있는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 꼭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저는 법률가이고, 법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 최성준 위원장

- 법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에 되어 있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글썄요. 법원에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포괄적 책임론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전통적인 구시대에 오래된 아날로그적인 법리 가지고서는 이것은 재발방지 정책을 펼 수 없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준 자료와 진술인들이 가져온 자료와 날짜가 하나 차이가 나는데 해커의 퇴직시기가 1월 4일입니까, 아니면 1월 14일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해커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예, 퇴직자….

○ 최성준 위원장

- 1월 4일이나, 1월 14일이나….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 자료에는 사용중지가 1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사용중지 날짜가 퇴직날짜 같은데 아까는 14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저희가 제출했던 입증자료에는 14일로 적혀 있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죄송합니다. 1월 14일이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날짜는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검찰에 4월 30일 송치가 됐는데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검찰 소환조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경찰에서 4월에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다시 재지휘 수사를 내렸고, 최근 지난주에 다시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송치가 됐다는 것입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한 번도 검찰에 소환된바 없다는 것이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검찰에 소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혹시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아는 것은 없고, 객관적인 지금 말씀 드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도 기업의 경우에 우리 기술 발전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 분들께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서, 또 사람이 필요하면 더 고용해서 정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이 매몰비용이니까 드러나지 않고 기업발전에 성장하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쪽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업에서 좀 더 힘을 더 써야 된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함께 어쨌든 지금 논란이 워낙 많아서 저 자신이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어서 판단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검찰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일단 송치가 됐다가 검찰이 재지휘 조사해서 지난주에 다시 또 송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지난주 무렵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주에 송치될 때 혹시 어떤 의견으로 송치됐는지는 아십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원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었지요?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원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얻어듣기로는 이것이 아마 경찰 쪽에서 일부 아주 사건 초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라고 지휘하였던 것으로 얻어듣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소의견으로 지난주에 송치됐습니까?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대강….

○ 김진환 (주)케이티 법률대리인

- 예, 대강….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 보면 마이올레의 의 경우에 결국에는 해커가 들어가서 계속 이용자번호를 쪽 돌려 넣으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다 보면 번호가 쪽 차례대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탐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을 탐지하는 기능 자체는 안 됐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우선은 IP와 PW를 치고 정상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왔던 가입자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입자가 사이트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계약자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탐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절차가 ID와 PW를 치고 요금명세서를 보려면 중간과정으로 이용자번호가 다시 매개가 되어야만 보는 것 아닙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매개가 되기는 하지만 파로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보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그냥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반인들은 클릭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일반인이 클릭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ID와 PW로 들어간 사람이 클릭을 하더라도 이용자번호가 매개가 되어서 요금명세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어쨌든 이용자번호를 다만 넣는 창이 없을 뿐이지, 이용자번호가 기록이 되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과정에서 해커가 할 때는 차례대로 쪽 넣다 보니까 '이런 것 없습니다'라는 것도 막 나올 것입니다.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연속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체크하는 기술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방비는 없었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웹 서비스의 경우에 특히 기본 사상이 이렇습니다.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빠르고 그다음에 고객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조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보통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으실 것 없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원사항 말씀 드렸는데 법적인 피해보상 말고 KT 회사 차원에서 도의적이거나 정책적 차원에서 혹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우선 KT의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보유출사고에 따른

3피해보상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피해자들 입장에서 결합상품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민원을 보니까 위약금 문제 때문에 가입을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선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위약금 반환에 관련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KT 약관에 의하면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은 위약금 반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힘없는 이용자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통신사와 상대를 해 보면 도대체 피해자들은 쉽게 말하면 아쉬우면 통신사 옮겨 가라, 서비스 다른데 이용하라는 것이지,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배상의 문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면 큰 규모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유예 부분입니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구책들이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지향하는 거대한 KT라는 회사와 힘없는 이용자 1명과 상대하는데 되겠습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누가 나서서 집단소송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누가 소송합니까? 그 사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만약에 집단 소송하지 않는다면 KT에서 개별 이용자들에게 대해서 피해 보상할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관심 안 가지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니까요. 재발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내에, 제 바람은 똑같은 사안으로 해서 안전이 안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자료 준비하면서 보도를 보니까 KT에서 소비자를 위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파장을 큰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 사건 이후에 했던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이 말씀 외에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KT 측에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케이티 측 의견진술인 퇴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은 이 뒤에 6페이지에 있는 행정처분 방안은 저희가 지금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적용이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거의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저것을 안 여쭙 봤네요. 혹시 밖에 계시면 잠깐만 다시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케이티 측 의견진술인 재입장)

죄송합니다. 아까 저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혹시 그것을 언제쯤 내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반론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습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바로 즉시 가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주일 정도면 됩니까, 한 2, 3일이면 됩니까?

○ 박종욱 (주)케이티 상무

- 2, 3일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케이티 측 의견진술인 퇴장)

그래서 이 뒷부분에 과징금 어떻게 해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을 오늘 더 설명 듣기보다는 그 앞부분을 저희들이 속행을 해서 다시 논의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까지 종합해서 또 각자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결론을 맺게 되면 그 뒤에는, 국장님, 뒤에 과징금과 과태료 계산은 거의 기계적으로 하게 되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금액 계산은 거의 기계적으로...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어차피 다음에 한 번 더 회의 안건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기왕 의견진술 기회를 줬으니까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답변을 일부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낼 기회는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논의했던 검찰 수사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송치가 됐다니까 검찰이 지난주에 송치 받아서 금방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치 의견은 알았으니까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리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처리시한은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오늘 처음부터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관계 확인 내지 총론적인 의견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의 핵심이 사실관계는 서로 입장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브로드(broad)하게 그것은 팩트라고 보고, 결국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고시를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라고 봤습니다. 추가로 설명자료는 다 받아야 합니다만 현행 법령의 적용 범위 문제 이것이 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KT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통신회사이고, 이것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면 제73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제28조제1항제2호~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아니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 분실, 도난, 변조, 또는 훼손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에서 조사한 내용, 그다음에 진술인들이 반론을 제시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파악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좀 더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연히 논의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시 또 회의에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이 처분을 하면 일단 저희로서는 그 조항이 적용되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대로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력한 자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이해관계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검찰의 결과가 송치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검찰의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그것까지 보고 참고해서 결정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검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끼리 먼저 논의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냥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든지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찰의 의견을 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방통위가 국내 최고의 디지털 분야의 정책기구이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밖에 자문도 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나 법원과는 독립적으로 우리의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는 될 것입니다. 법원 판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것만 따져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사회 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그 업계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도 가능하면 그 검찰결과와 관계없이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속행하는데 다음 주로 할까요, 아니면 2주 뒤로 할까요? 언제쯤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더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로….

○ **김재홍 상임위원**

- 다음 주로….

○ **고삼석 상임위원**

- 안건은 어차피 다음 주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충분히 그때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하시면 하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끝난 상태라면 속행을 다음 주에 하고,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 주 정도 더 다음 주로….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제가 의견을 여쭙 보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시기를 다음 주다, 다다음주다 이것보다는 아까 제가 자꾸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80% 확인한 상태라도 저희가 중요하게 토론해야 할 것이 법률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행 고시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보면 어떨까요?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단 논의를 한 번 해 보고 다음 기일을 정하자는 취지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충분히 다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일주일 뒤든지 이주일 뒤든지 그때가 아니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논의했지만 제가 말씀 드린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안 됐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들이 논의를 더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 부분을 한 번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와 총론에 관한 이야기가 됐고 법률 적용 관계 논의를 한 번 해야 대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언제쯤 결론을 향한 논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후자에 관한 논의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논의가 하여튼...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해서 어느 정도 그 결론에 도달할 상황이 되면 그때 기일을 정하자는 취지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티타임이 됐든 다음 주에 논의가 됐든 그 부분이 한 번 논의가 돼야 그다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계속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회의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일단 각자 논의를 정리해서 이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상임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 같고, 티타임을 통해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좋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한정 늦어져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만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절차를 따라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가능하면 신속하게 어차피 심리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속행하되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또 내부 논의를 한 번 거치고 다음에 언제 속행할지 기일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잠깐 시간은 늦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기가 그저께 취임식을 갖고 출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언론을 통해 취임식 내용을 보았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정책과 방송통신 문화진작과 방송프로그램의 질 문제와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업무이고,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방통위의 상임위원으로서 맡고 있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직무입니다. 우리의 직무와 업무영역을 잘 지켜서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와 일반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회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방송통신 정책, 그 문화, 프로그램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위원회 법

정위원회가 있고, 방통위에 다양한 여러 담당기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해 나가서 방송의 시청자와 통신의 이용자와 그분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의 여론 형성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저희의 직무와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면서 언젠가도 한 번 언급이 있었습시다만 방통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적인 민간기구입니다. 자율적으로 심의해 놓은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처분 잘못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방통위원회가 피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책임에 따른 권한행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쪽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방송통신 정책을 할 수 있고, 심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의규정에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업무영역을 확대하느냐 하는 것도 토의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엇그저께 출범하면서 어제 언론에 비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 드리 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의위원회와 저희와의 관계는 저희도 이번에 좀 더 절차에 관련해서 앞으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 업무영역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날짜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50분 폐회 】